

전기통신사업자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의 기준(제45조의2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처분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사업정지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.

가. 가중 사유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의 기간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 등에 비추어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4)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나. 감경 사유

- 1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)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처분기준
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52조제5항	사업정지 3개월